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민방위기본법』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앞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- 1. 공고의 명칭 : 민방위기본법 위반(2023년 교육불참자)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고
- 2. 공 고 기 간 : 2024. 5. 10. ~ 2024. 5. 23. (15일간)
- 3. 공고내용

가. 공고대상

	성 명	주 소	반송사유	비 고
1	신*호	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***	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	
2	양*영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***	반송불능	
3	김*기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***	반송불능	
4	최*빈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***	반송불능	
5	최*훈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***	반송불능	
6	김*욱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***	반송불능	
7	추*록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***	반송불능	
8	박*환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***	반송불능	
9	성*민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***	반송불능	
10	전*걸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***	반송불능	
11	김*훈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***	반송불능	
12	김*석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***	반송불능	

나. 공시송달 내용

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귀하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, 동화동에 방문하여,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 동화동(02-3396-684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

동 화 동 장 